

아래는 「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헌법안(공주민제 구현)」 초안이다. (문언은 최소한으로 두고, 설계는 법률로 위임하는 구조로 잡았다.)

---

##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헌법안(공주민제 구현)

### 1. 제안이유

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구조가 약화되는 경제·기술 환경에서, 국민이 자본 및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경제민주화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, 사영기업 국유화·경영통제 금지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 해소하고, 조세 납부 방식의 다변화(금전 외 재산적 급부)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자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.

### 2. 주요내용

1. 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(국민자산계정·국민자산신탁) 조항 신설
2. 경제민주화 조항에 “귀속·추출 남용 방지·분산 소유” 명시
3. 사영기업 국유화·경영통제 금지 조항에 “경제민주화 목적” 및 “독립적 국민자산신탁”을 통한 수익권 보장 근거를 추가
4. 조세법률주의에 “납부 방식” 포함, 납세의무에 “금전 외 재산적 급부” 가능 근거 추가
5.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안전장치 원칙 명시
6. 자원 조항에 정보·데이터·디지털 인프라·알고리즘 자원에 관한 보호·공정 이용·이익 귀속 근거 추가
7. (선택안) 근로의 의무를 “사회적 기여”로 확장

---

### 3.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 (신설) 제34조의2(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)

현행

(없음)

개정안

#### 제34조의2(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)

- ① 모든 국민은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디지털·플랫폼 수익에 대하여 기본적 접근권을 가진다.
- ②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자산계정과 국민을 수익자로 하는 국민자산신탁 제도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제도는 보편성, 비차별성, 투명성, 세대 간 계급 고착 방지 및 사적 지배의 방지 원칙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.

## (신설) 제34조의3(국민자산신탁의 독립성과 통제)

### 현행

(없음)

### 개정안

#### 제34조의3(국민자산신탁의 독립성과 통제)

- ① 제34조의2에 따른 국민자산신탁은 국민 전체를 수익자로 하는 독립적 제도로서, 그 조직·권한·운영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- ② 국민자산신탁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 법률은 그 임원 임면, 임기, 결격 및 해임 사유를 엄격히 정하여야 하며, 임원의 임면은 단일 기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다원적 절차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국민자산신탁의 자산 운용과 의사결정은 투명하여야 하며, 이해충돌의 방지, 로비 및 외부 영향력의 공개, 회계의 분리와 공개, 상시적 감사가능성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자산신탁은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의 귀속 규칙과 그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은 예외로 한다.
- ⑤ 국민자산신탁의 수익권은 보편성과 평등 원칙에 따라 부여된다. 법률은 수익권의 양도·담보 제공 및 상속에 관하여 계급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을 둘 수 있다.
- ⑥ 국민은 국민자산신탁의 운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 국민자산신탁의 처분 또는 운영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및 항고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, 법률은 그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공공기관은 국민자산신탁에 대한 감독 및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및 공개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

---

## (개정) 제119조(경제질서)

### 현행

#### 제119조

-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
-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
### 개정안

#### 제119조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는 자본 및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

공정한 귀속, 추출의 남용 방지,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분산 소유·참여를 위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.

---

## (개정) 제126조(사영기업 국유화·경영통제 금지)

현행

### 제126조

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

개정안

### 제126조

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또는 제119조 제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은 국가가 아닌 독립적 국민자산신탁을 통하여 국민의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업의 일상적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.

---

## (개정) 제59조(조세법률주의)

현행

### 제59조

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.

개정안

### 제59조

조세의 종목과 세율, 과세요건, 부과·징수 절차 및 납부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.

---

## (개정) 제38조(납세의무)

현행

### 제38조

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

개정안

### 제38조

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 법률은 조세의 납부를 금전 외에 지분, 수익권 기타 재산적 급부로 정할 수 있다. 단, 법률은 납부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

---

## (개정) 제17조(사생활의 비밀과 자유)

현행

**제17조**

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개정안

**제17조**

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. 국가는 정보·데이터의 수집·결합·이용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비식별화, 목적 제한, 접근 통제, 감사 가능성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.

---

## (개정) 제120조(자원)

현행

**제120조**

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·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.

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

개정안

**제120조**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정보·데이터·디지털 인프라 및 알고리즘 자원을 보호하고, 공정한 이용과 국민에 대한 이익 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.

---

## 4. 부칙(안)

**제1조(시행일)**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이 헌법 시행 당시 제34조의2 및 이에 따른 국민자산계정·국민자산신탁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법률로 정한다.

**제3조(법률 정비)**국회와 정부는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조세·재정·개인정보 보호·디지털 자원 관련 법률을 이 헌법 시행일 전까지 정비하여야 한다.

---

## 5. 선택 개정 조문

(선택) 제32조 제2항(근로의 의무)

현행

제32조

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
선택 개정안

제32조

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근로 또는 사회적 기여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
---

2026.1.21. 이상연